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21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98	김병주의원	2024. 8. 6.	2024. 11. 15.
	15288	임종득의원	2025. 12. 16.	2026. 3. 17.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 3.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 3. 24.)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숙소인 관사 또는 간부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의 경우에는 관사 입주자격이 없기에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며, 만약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차지원 등을 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거지

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사”를 “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군 숙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숙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생 략)

② ~ ④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